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환공여구역 개방 이전 토양오염 등 제거의무 부여〉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0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반환공여구역 ‘개방’ 이전 토양 오염 등 제거의무 부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
3. 회부연월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하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반환공여구역 ‘개방’ 이전 토양 오염 등 제거의무 부여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을 ‘공중에게 개방’하기 이전에도 지상물, 지하 매설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방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④ (생략)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u>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u>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u>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거나 공중(公衆)에게 개방하기</u>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징발해제나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데,¹⁾ 이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여구역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구역이 반환된 이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공여구역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²⁾

다만, 반환공여구역의 처분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부지를 공중(公衆)에게 임시 개방³⁾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안은 임시 개방 등 ‘개방’ 이전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제5호의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2) 현재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부사업인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등의 정화를 추진 중에 있음.

[참고]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예산 현황: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예산	56,754	64,524	65,002	54,223	45,349	57,170

자료: 국방부 예산 사업설명자료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캠프하야리아)은 임시활용을 위한 시범개방(‘10.4~’10.9) 이후 오염정화(‘11.4~’12.8)·처분이 이루어졌음.

[반환부지 임시활용 후 오염정화 사례]

① 부산 캠프하야리아 임시활용('10.4~'10.9.) → 오염정화('11.4.~'12.8.) → 공원개장('14.5.~)
② 인천 캠프마켓 임시개방('20.10~'21.4) → 오염정화(~'23.6)
③ 서울 용산기지(장교숙소5단지) 임시개방('20.7~)
④ 서울 극동공병단 코로나 임시치료병동('21.1.~'22.3.) → 오염정화('21.8.~)
⑤ 서울 용산기지(용산어린이정원) 추가 임시개방('23.5~)

※ 자료 : 국방부, 국토교통부

< 용산공원 임시개방 추진 현황 >

□ 임시개방 현황

- 용산기지 반환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및 공원 정식조성에 대한 기대감 확산 등을 위해 부분반환부지에 대한 임시개방 추진

□ 장교숙소 5단지('20.7.~)

- '86년 반환 후 미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던 부지(장교숙소 4·5·7단지) 중 접근성이 좋은 5단지(5만㎡)를 정비하여 '20.7월 최초 임시개방
 - (면적/방문객) 5만㎡ / 625,572명('20.7~'24.8)
 - (주요시설) 4개 구역(시니어·어린이·청년·청소년)으로 나누어 세대별 특화된 공간*으로 구성하고 중앙에는 공유가든 배치
 - * 어린이 실내도서관·놀이터, 전시시설, 카페 등
 - ('24년 운영현황) 카페 오픈('24.8.~), 시니어 파크골프장 조성('24.11.~)

□ 용산어린이정원('23.5.~)

- 기지반환 협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22년 반환된 58.4만㎡ 부지 중 국방부 인근 약 30만㎡를 정비하여 어린이정원 임시개방('23.5.~)
 - (면적/방문객) 30만㎡ / 317,669명('23.5.~'24.8.)
 - * '23.5 최초개방 22만㎡ → '23.8 분수정원 개방 28만㎡ → '23.10 테니스장 개방 30만㎡
 - (주요시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전시·체험공간*과 잔디마당, 분수정원, 스포츠�필드 등 야외 시설도 다양하게 조성
 - * 홍보관, 용산서가(도서관), 전시관, 기록관, 이벤트하우스, 카페 등
 - ('24년 운영현황) 3개동(기념품샵, 환경·보훈전시관) 리모델링·오픈, 어린이날 기념 행사, 여름철 물놀이행사 등 10여회 행사 개최

※ 자료: 행정안전부

오염물질 정화 이전에 반환공여구역을 공중에 개방하는 경우 토양·지하수의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이후에 공중에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노출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토양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특히 현행법령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⁵⁾ 반환공여구역 예정지에 대한 환경조사는 한국-미국 간 체결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한미 공동으로 수행될 뿐 임시개방 전 위해성 저감 조치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⁶⁾

-
- 4) - 제22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0.) : 용산 어린이정원 토양오염 관련 지적
- 「교사노조 “용산 어린이정원 토양 오염도 기준 밝혀야”」, YTN, 2023.5.8.
- 제21대국회 제39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2022.5.16.
제21대국회 제398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2022.8.4.
→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시범 개방지역 중 석탄계총탄화수소·아연 등 중금속의 대책기준 초과, 지하수의 TPH, 벤젠, 페놀류의 유독물질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개방 앞둔 용산공원... 전 부지 토양·수질 ‘초과 오염」, SBS뉴스, 2022.6.7.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참고로, 용산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6.27.~2023.2.28. 토양 안전성 분석 및 예방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환경안전성 보완

다만, ① 반환이 완료된 이후 오염정화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임시활용이 지연될 수 있는 점,⁷⁾ ② 현행법은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⁸⁾ ③ 환경조사에 따라 위해성 저감 안전조치 후 일부 부지를 임시 개방하고 있다는 점⁹⁾을 고려할 때, 공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하였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일부 지역의 조기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이 외에도 ‘개방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 예방’과 ‘임시활용을 통한 주민 편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저감조치 절차, 오염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시개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개방 전 토양오염을 제거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환경조사에 따라 위해성 저감 안

조치를 거친 바 있음.

7)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캠프워커(대구), 캠프마켓(인천), 캠프잭슨(의정부) 등은 오염정화 중이며, 캠프모빌(동두천), 캠프케이시(동두천), 캠프호비(동두천) 등은 미반환 중임.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용산공원은 ①토사피복(인조잔디 포장, 녹지조성 등), ②위해요소 제거(유류탱크 철거 등), ③체류시간 관리(예 : 주 3회, 회당 2시간 이용), ④모니터링후 행정조치(위해요소 보완공사, 필요시 휴원 등) 등 위해성 저감조치를 시행한 뒤 임시개방하고 있음.

전조치 후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일부 부지의 임시활용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여겨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방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환경조사 및 저감조치 후에 실제 임시개방한 사례가 존재하며,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저감조치 후 임시개방하는 부지까지 개방 전 정화를 강제하여 장기간 방치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편익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0